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정지원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 제779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조, 제8조
- 「청년기본법」 제4조,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의 권리를 보장받아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이 제정된 바 없어 법적 용어와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유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지자체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이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음. 우리시는 “청소년·청년의 연령”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 9세~24세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 19세~39세를 종합한 9세~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 케어러(Young Carer, 아동·청소년돌봄자)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이들을 특정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인 영국이 기준점이 되고 있음.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에서는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건사회서비스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정의함. 또한, 18~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청년돌봄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돌봄법」에서 규정함.

(출처 : 해외 영 케어러 지원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2.22, 제242호)

우리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부모가 사망·실종·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함.

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계획, 체계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분야의 청소년·청년 계획들과 중복·상충될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발굴에 대한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통합상담 및 종합지원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발굴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유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성이 인정됨.

제 정 안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인한 부정·중복 방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